# 사업안내서

# 「2024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(CRC) 지원사업」

2024. 2.



# 1

## 사업개요

## □ 사업목적

- 급변하는 문화콘텐츠 산업 방향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의 R&BD(고도화 또는 리뉴얼) 지원
- 도내 문화산업 기업의 비즈니스모델 고도화, 리뉴얼 지원으로 기업 자생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 발굴

## □ 사업개요

- O 사 업 명: 2024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(CRC) 지원사업
- O 사업기간: 협약체결일로부터 ~ 2024. 11. 30.
- 공고기간: 2024. 2. 23.(금) ~ 2024. 3. 14.(목) 18:00까지(21일간)
- O 접수기간: 2024. 3. 13.(수) ~ 2024. 3. 14.(목) 18:00까지(2일간)
- O 지원규모

지원금	민간부담금(자부담)	지원규모
과제당 년간 150,000천원(총 2년) ※ 단, 선정평가 최우수 (최고득점) 과제 1건에 대해서 45,000천원 추가지원	년간 총사업비의 10% 이상 예: 지원금 150,000천원 / 자부담 16,670천원 이상	3개 과제

- ※ 접수시에는 150.000천원 기준으로 과제계획 작성
- ※ 최우수 과제로 선정 시. 협약과정에서 195.000천원으로 과제계획 보완 예정
- O 지원분야 : 기존에 사업화(상용화)에 성공하여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중인 비즈 니스모델(문화콘텐츠)의 R&BD(고도화, 리뉴얼)지원

구분	지원분야
	● 게임, 공연, 음악, 실감형콘텐츠(VR, AR, XR, MR, 프로젝션맵핑, 홀로그램 등),
	교육콘텐츠(단순교구 제외), 관광콘텐츠(어플리케이션 포함) 등 문화콘텐츠 전 장르
	※ R&BD 결과물이 영화, 애니메이션일 경우에는 지원 제외함
문화콘텐츠	※ 단, R&BD 결과물이 영화, 애니메이션이더라도 ICT 기술을 결합한 작업물인
R&BD 지원	경우는 지원 가능
	(예: 평면스크린 기반의 애니메이션을 VR로 개발 -> 지원 가능)
	※ 사업화(상용화) 성공 여부는 최근 5년 이내 발생(발급) 된 증빙서류(계약서,
	매출증빙, 실적증명서 등)로 판단 예정

- ※ 비즈니스모델 R&BD란 기존에 사업화에 성공한 비즈니스모델의 고도화나 리뉴얼를 의미하며, 가이드 모델로 아래 4가지 방향을 제시함
- ① 콘텐츠 장르 전환을 목표로 한 비즈니스모델(콘텐츠) 고도화, 리뉴얼

(예: 애니메이션 -> 모바일게임, 모바일게임 -> VR게임, 애니메이션 -> 공연)

- \* 대분류(장르)가 동일하더라도. 개발포맷(예: 2D->3D)이 달라질 경우에는 지원 가능
- ② 사업화(유통) 플랫폼 전환을 목표로 한 비즈니스모델(콘텐츠) 고도화. 리뉴얼

(예: 실감전시 콘텐츠(오프라인)를 메타버스(온라인) 공간 내에 구현 및 적용)

(예: 스크린 기반의 애니메이션(TV, OTT, 박스오피스 등)을 VR로 구현)

③공간기반(공연, 전시 등) 콘텐츠 비즈니스모델의 고도화, 리뉴얼

(예: 상설 공연 공간의 공연콘텐츠 리뉴얼 및 신규제작 지원)

- \* 공간기반 콘텐츠(공연, 전시 등)의 경우, 공간(플랫폼) 자체를 비즈니스모델로 보며, 해당 비즈니스모델의 고도화(리뉴얼)을 위한 신규 콘텐츠 제작 지원
- \* 단,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공간이 지속적으로 운영중인 상태여야 하며, 해당 비즈니스모델 (콘텐츠)의 전용공간이어야 함

(예: 제주아트센터에서 공연중인 뮤지컬 -> 지원불가(해당 공연의 전용공간이 아님)

(예: 전용공연장을 확보한 넌버벌 공연 -> 지원가능(전용공간 확보)

④ ICT 기술 적용을 통한 비즈니스모델(콘텐츠) 고도화, 리뉴얼

(예: 기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에 AI엔진을 활용한 개인화된 추천서비스 도입)

(예: 3D 이머시브 콘텐츠(체험형)에 360 볼류메트릭 캡쳐 및 자동 모델링 기술 도입)

(예: 라이브스트리밍 콘텐츠(플랫폼)에 다중초점 입체영상 기술(예:플렌옵틱) 도입)

## 2 지원내용

## □ 지원자격

- O 지원자격(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)
  - 공고일 현재,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기준 본사 또는 지사 (별도 사업자법인 필수)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중소기업(법인)
  -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'문화산업' 분야를 영위하는 콘텐츠 개발 및 제작이 가능한 중소기업(법인)
  -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'문화산업'에 해당되는 비즈 니스모델의 고도화(또는 리뉴얼)을 희망하는 기업(법인)

#### <문화산업진흥기본법> 제2조 제1항

"문화산업"이랑 문화상품의 기획, 개발, 제작, 생산, 유통,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.

- 가. 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
- 나, 음악 게임과 관련된 산업
- 다. 출판 · 인쇄 · 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
- 라.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
- 마.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
- 바. 만화·캐릭터·애니메이션·에듀테인먼트·모바일문화콘텐츠·디자인(산업디자인 제외)·광고·공연 ·미술품·공예품과 관련되 산업
- 사. 디지털문화콘텐츠,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·가공·개발·제작·생산·저장·검색·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
- 아. 대중무화예숙사업
- 자.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, 조형물, 장식 용품,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
- 차.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·박람회·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(다만,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·박람회·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)
- 카.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

## □ 지원 필수조건

- ① **총 사업비의 10%를 자부담금(현금)으로 매칭**해야 함 (예: 지원금 150,000천원인 경우, 자부담 16,670천원 매칭)
- ② 지원 년도별로 최소 1명 이상의 채용(정규직, 5개월 이상 고용)을 실시해야 함
- ③ 최소 1건 이상의 지식재산권(특허, 상표권, 디자인권, 저작권 등) 등록
- ④ 1차년도(2024년)에 최소 1건 이상의 비즈니스모델 R&BD를 진행해야 하며, 사업기간 내에 해당 결과물을 상용화(사업화) 해야 함
- ⑤ 참여인력은 (재)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정하는 ESG관련 교육 이수 필수

## □ 지원 제외대상

- 공공기관, 비영리기관 및 개인사업자는 지원 불가
- 신청일 현재 국가나 공공기관(단체)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 받고 있는 경우
  - ※ 선정완료 이후라도 동일, 중복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
- O 신청마감일 현재, 수행기업 및 수행기업의 장, 과제책임자가 (재)제주영상· 문화산업진흥원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- O 신청마감일 현재, 수행기업 및 수행기업의 장, 과제책임자가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

자로 등록된 경우

- 신청마감일 현재 수행기업의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500%이상인 경우 및 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
- 신청마감일 현재 수행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
- 신청마감일 현재 수행기업 및 수행기업 장의 파산,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 어진 경우
- 수행기업 및 수행기업의 장이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의 기술료, 정산금, 환수금 등을 미납중인 경우

## □ 년차별 지원방향

2024년(1년차) 2025년(2년차) CRC New 비즈니스모델 지원 우수 비즈니스모델 R&BD 지원 보완 및 사업화 지원 지워 도내 문화산업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모델 R&BD를 지워하여. 시엄화 역량 강화를 통한 기업 자생력 확보 지원 목표 지워 3개 과제 과제 195.000천원 1건(최우수) 195.000천원 1건(최우수) 150.000천원 2건(우수) 지워 150,000천원 2건(우수) ※ 1차년도 결과평가 최고득점 규모 ※ 선정평가 최고득점 과제에 과제에 한해 인센티브(4.500 한해 인센티브(4.500만원) 지급 만원) 지급

- ※ 인센티브는 지원금 성격이며. 사업비로 추가 편성하여 집행해야 함
- ※ 사업종료시 인센티브에서 잔액이 발생하거나 불인정금액이 발생할 경우 반납해야 함

## 3

## 공모일정 및 세부사항

#### □ 공모일정

- 공모기간: 2024. 2. 23.(금) ~ 3. 14.(목) 18:00까지(21일간)
- 접수기간: 2024. 3. 13.(수) ~ 3. 14.(목) 18:00까지(2일간) ※ 일별 접수시간은 09:00 ~ 12:00 / 13:00 ~ 18:00까지이며,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접수 불가

## □ 접수처

- O 온라인(이메일) 접수
-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에 따라 작성 후 날인하여 PDF파일로 제출
- O 접 수 처: allmore@ofjeju.kr (문화산업팀 김하섭 책임)

## □ 제출서류 안내

구분	제출서류	제출형식	유의사항					
1	과제계획서	● HWP(날인X) ● PDF	● 표지를 제외하고 <u>22페이지 이내</u> 로 작성					
2	위탁사업계획서	• PDF	• PDF					
3	사업자부담금 확약서	• PDF	• 지정양식에 작성, 직인 날인하여 제출 ※ 사업자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10% 이상이어야 함					
4	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• PDF	●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1개의 PDF파일로 제출 ● <b>참여예정인력 전체의 <u>자필서명</u> 필수</b>					
5	표준재무제표증명원 (최근2년)		● 최근2년(2022, 2023년) 재무제표 ※ 23년도 미결산시 추후 23년도분 제출 가능					
6	사업자등록증 사본							
7	법인등기부등본	• PDF	• PDF • 각 기관별로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로 제					
8	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서		※ 유효기간 확인 필수					
9	4대보험 완납 증명서							
10	사업화 증빙서류	● PDF (원본대조필 필수)	<ul> <li>R&amp;BD할 비즈니스모델의 사업화(운영) 여부를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</li> <li>예: 판매(유통) 계약서, 매출(실적)증빙, 실적증명서 등</li> <li>* 최근 5년 이내 발생(발급) 건만 인정 (인정기간: 2020. 2. ~ 2024. 2.)</li> </ul>					
11	평가위원 추첨표	• PDF	● 제출양식 내 추첨표 양식 작성 및 제출					
12	우대가점 증빙	• PDF	• 입주기업확인서는 각 인프라에서 발급 가능					

- ※ 제출서류 6번은 신청일 기준으로 발급받아 제출 요망
- ※ 7~9번은 제출시 유효기간 확인 필수(제출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)

#### 이메일 제출시 파일정리 방법

- 상단의 표에 따라 각 번호별로 파일분리 요망
- 폴더 생성(폴더명: 2024 CRC\_제출기업명) 후, 제출서류별로 폴더 생성 후 파일 첨부

2024-02-22 오후 1:44	파일 폴더
2024-02-22 오후 1:45	파일 폴더
2024-02-22 오후 1:45	파일 폴더
2024-02-23 오후 2:04	파일 폴더
2024-02-22 오후 1:45	파일 폴더
2024-02-22 오후 1:46	파일 폴더
2024-02-22 오후 1:46	파일 폴더
	2024-02-22 오후 1:45 2024-02-22 오후 1:45 2024-02-23 오후 2:04 2024-02-22 오후 1:45 2024-02-22 오후 1:45 2024-02-22 오후 1:45 2024-02-22 오후 1:45 2024-02-22 오후 1:45 2024-02-22 오후 1:45 2024-02-22 오후 1:45

## □ 접수 및 문의처

분야	담당자	연락처
CRC 사업관련	김하섭 책임	064-735-0618
입주기업확인서 관련 (제주콘텐츠코리아랩)	박기석 책임	064-735-0616
입주기업확인서 관련 (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)	이광성 주임	064-766-0707

# 4

## 평가내용

## □ 선정기준

- O 서면검토: 서면검토로 적부판정 후, 적정 판정을 받은 기업에 한해 발표평가 기회 부여
- O 발표평가: 우대가점을 포함하여, 평가점수 평균이 60점 이상인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3개 과제 선정
  - ※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, 우대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선정하며, 우대가점을 제외한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성 항목 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
- 우선협상대상 선정: **발표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**
- ※ 우선협상대상자(기업)에게는 과제 선정평가 결과 및 의견을 바탕으로 과제보완조치가 진행될 수 있으며, 과제 검토 후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
- ※ 최우수과제(선정평가 최고득점)의 경우, 과제계획서 보완과정에서 인센티브 4,500만원을 추가사업비로 편성 예정
- ※ 인센티브는 지원금 성격이며, 사업비로 추가 편성하여 집행해야 하고, 잔액은 반납해야 함
- ※ 우선협상대상 과제로 선정된 기업이 과제수행을 포기할 시, 후순휘 후보를 선정할 수 있음

## □ 평가방법

- O 심의위원회(5인 이내)를 구성하여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과제로 최종 선정
- 발표시간: 평가대상 기업당 30분 이내(15분 발표, 15분 질의응답)
- 발표자료: PPT등 자유양식으로 준비하되, 발표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
- O 발 표 자: 평가대상 기업의 과제 책임자
- ※ 과제책임자가 발표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업의 대표자가 대리 가능

#### □ 평가항목 및 배점

구분지표	세부지표	내용	배점
전문성 및 우수성	기업전문성 및 비즈니스모델의	유사과제 수행경험을 감안한 기업 전문성 및 인력우수성	30
(30점)	우수성	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우수성 및 확장성	30
과제 우수성	R&BD 계획의	R&BD 계획의 구체성 및 예산편성의 타당성	20
(30점)	구체성 및 타당성	진입예정인 시장분석 결과 및 목표(성과)의 명확성	30
사업성	사업화 계획 완성도	R&BD후 사업화(상용화) 계획의 전문성 및 안정성	
(40점)	사업화 가능성	사업화(상용화) 이후 발전가능성 및 지속성	40
		합 계	100

#### 【우대가점】

우대가점 부여대상

- 〈제주콘텐츠코리아랩〉, 〈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〉 입주기업(2점)
- 여성기업(1점). (예비포함)사회적기업(1점)
- 2024년(협약일 ~ 2024, 11.)에 기준 목표치(정규직 1명) 이상의 채용 약정

2024년 채 <del>용목</del> 표	정규직 2명	정규직 3명	정규직 4명 이상
우대가점 부여	1점	2점	3점

※ 우대가점은 과제당 최대 5점 부여

## □ 평가 이후 절차



※ 과제보완 단계에서 과제별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으며, 선정평가 최고점을 얻은 최우수 과제는 인센티브 4.500만워을 추가하여 19.500만워으로 사업비를 다시 편성해야 함

# 지원금 지급 및 절차

## □ 지원금 지급

- 1차 지원금: 협약체결 후 중간평가 이전까지 1차 지원금 지급(50%)
- 2차 지원금: 중간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인 경우 2차 지원금 지급(50%) ※ 회차별 지원금 지급 비율은 예산교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구분	중간평가 점수	2차 지원금 지급	비고
합격	60점 이상	2차 지원금(50%) 지급	과제 지속수행
불량	60점 미만	과제실패 및 탈락	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

# ----

6	<b>J</b>	나업비 편성기준							
비목	구 분	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	집행 방법	증빙사항					
인건비	보수	○ 정규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(근로자 4대 보험료가 포함된 임금 총액)		< <b>정산시 제출서류&gt;</b> ○ 근로계약서 ○ 근로자 명의 통장으로 이체한 이체확인증 ○ 월별 급여명세서					
	기타직 보수	.,.,,		○ 월별 4대보험 가입자명부(근로사실 확인용) <b>〈불인정 기준〉</b> ○ 퇴직급여 충당금 등 퇴직금 관련 비용 편성 불기					
	- <b>신규채</b> - 인건비 - <b>기업대</b> - 필수차 - 인건비								
일반 운영비	- 단, 기 전문가 활용비	입부담분 4대보험료 및 일회성 수당(예: 상0 ○ 과제추진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비(건 설팅 등) 편성 * 내부인력에게는 지급 불가							

일만	[선문가	○ 과세수신에 필요한 선문가 사운비(건	계솨이제	<성산시 세술서듀>
운영비	활용비	설팅 등) 편성	우선	○ 자문계획서, 지출결의서
		* 내부인력에게는 지급 불가		○ 기타소득,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(날인 필수
		○ 과제추진에 필요한 프리랜서 활용 비용		○ 자문위원(전문가)의 경력을 알 수 있는 이력서
		* 기업(법인)에 외주 줄 경우에는 일반		○ 전문가 통장사본 및 이체 확인증
		수용비(용역비)로 편성 필수		○ 자문결과보고서(증빙사진, 회의록 필수)
				※ 회의록 양식은 선정시 별도 공유 예정
				※ 1회(1일) 이상 자문 받을 경우에는 자문 건별로
				회의록 및 증빙사진 제출 필수
				○ 프리랜서 활용비용 편성 시, 계약서 및 세부적인 과 <b>열</b>
				내용이 담긴 과업지시서 작성 필수
				○ 프리랜서 활용비용 지출 시, 결과보고서(산출물 내 <sup>9</sup>
				및 증빙사진 필수), 검수조서 제출 필수
				<불인정 기준>
				○ 자문결과보고서 및 증빙사진이 미첨부된 자문건

#### [주의사항]

- 전문 컨설팅 기업 등, 기업을 통해 자문받을 경우에는 '용역계약'필수
- 시간당(일당) 자문료 기준은 사업지침 준수
- \* 시간당 최대 10만원 지급가능 / 일 최대 30만원 지급 가능
- 프리랜서 활용 비용 편성 시, 건당 최대 1.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**. 프리랜서 활용비용은 용역비용에 포함해서 집계함**

○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와 계약되어 진행된 용역건 ○ 사업지침 내 자문료 기준을 초과한 집행 건

기 분 세목	산정	기준	및 세부 내용	집행 방법	증빙사항
	○ 회계검사	민 저시			<정산시 제출서류>
774	O MUION	* 00	: ++#		○ 지출결의서
					○ 사업비카드영수증 or 전자세금계산서(이체내역 증빙)
				계좌이체	
					○ 견적서
					○ 납품서 또는 검수확인서
					<불인정 기준>
					○ 회계검사 주체가 전문회계법인이 아닐 경우
[회계정산	수수료표(예상)	]			
1억 (	이상 2억원	미만	900,000원	총 금액	<u>o</u>
2억 (	이상 3억원	미만	1,000,000원	지원금 +	· 자부담금 기준
회의비	○ 과제추진 교	과정에서 표	필요한 식비, 다과비 편성	사업비	<정산시 제출서류>
	* 회의 수당	성격으로	는 지급 불가	전용카드	○ 지출영수증
				사용 및	○ 회의록(회의일시, 내용, 참석자명부, 증빙사진 필수
				계좌이체	<불인정 기준>
					○ 내부인력만으로 회의 개최시 집행된 비용
					○ 회의록 미제출 건은 불인정
1	- =행기업 내부인			l 가(반드시 침	h여기업 외, 외부인력 참석 필수)
- 사업 수	- =행기업 내부인		회의 개최시에는 집행 불: <b>5,000원 편성 가능</b>	가(반드시 침	  -   여기업 외, 외부인력 참석 필수)
- 사업 수 - 회의 참	- -행기업 내부인 - -행기업 <b>별로 1</b> :	회 최대 1		사업비	<정산시 제출서류>
- 사업 수 - 회의 참	- -행기업 내부인 - -행기업 <b>별로 1</b> :	회 최대 1	5,000원 편성 가능	사업비 전용카드	<정산시 제출서류> ○ 내부 계획서(결재문서), 지출결의서
- 사업 수 - 회의 참	- -행기업 내부인 - -행기업 <b>별로 1</b> :	회 최대 1	5,000원 편성 가능	사업비 전용카드 사용 및	<정산시 제출서류> ○ 내부 계획서(결재문서), 지출결의서 ○ 사업비카드영수증 or 전자세금계산서(이체내역 증빙
- 사업 수 - 회의 참	- -행기업 내부인 - -행기업 <b>별로 1</b> :	회 최대 1	5,000원 편성 가능	사업비 전용카드	< <b>정산시 제출서류&gt;</b> ○ 내부 계획서(결재문서), 지출결의서 ○ 사업비카드영수증 or 전자세금계산서(이체내역 증방) -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, 거래처 통장사본, 사업자등록증 제6
- 사업 수 - 회의 참	- -행기업 내부인 - -행기업 <b>별로 1</b> :	회 최대 1	5,000원 편성 가능	사업비 전용카드 사용 및	<정산시 제출서류> ○ 내부 계획서(결재문서), 지출결의서 ○ 사업비카드영수증 or 전자세금계산서(이체내역 증방) -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, 거래처 통장사본, 사업자등록증 제慮 ○ 견적서, 비교건적서
- 사업 수 - 회의 참	- -행기업 내부인 - -행기업 <b>별로 1</b> :	회 최대 1	5,000원 편성 가능	사업비 전용카드 사용 및	<정산시 제출서류> ○ 내부 계획서(결재문서), 지출결의서 ○ 사업비카드영수증 or 전자세금계산서(이체내역 증방) -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, 거래처 통장사본, 사업자등록증 제한 ○ 견적서, 비교견적서 ※ 500만원 이상 계약의 경우 비교견적서 2개 이상 제한
- 사업 수 - 회의 참	- -행기업 내부인 - -행기업 <b>별로 1</b> :	회 최대 1	5,000원 편성 가능	사업비 전용카드 사용 및	<정산시 제출서류> ○ 내부 계획서(결재문서), 지출결의서 ○ 사업비카드영수증 or 전자세금계산서(이체내역 증방) -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, 거래처 통장사본, 사업자등록증 제慮 ○ 견적서, 비교건적서
- 사업 수 - 회의 참	- -행기업 내부인 - -행기업 <b>별로 1</b> :	회 최대 1	5,000원 편성 가능	사업비 전용카드 사용 및	<정산시 제출서류> ○ 내부 계획서(결재문서), 지출결의서 ○ 사업비카드영수증 or 전자세금계산서(이체내역 증방) -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, 거래처 통장사본, 시업지등록증 제6 ○ 견적서, 비교견적서 ※ 500만원 이상 계약의 경우 비교견적서 2개 이상 제6 ○ 결과보고서(결과물 포함), 검수확인서(조서)
- 사업 수 - 회의 참	- -행기업 내부인 - -행기업 <b>별로 1</b> :	회 최대 1	5,000원 편성 가능	사업비 전용카드 사용 및	<정산시 제출서류> ○ 내부 계획서(결재문서), 지출결의서 ○ 사업비카드영수증 or 전자세금계산서(이체내역 증발) -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, 거래처 통장사본, 사업지등록증 제6 ○ 견적서, 비교견적서 ※ 500만원 이상 계약의 경우 비교견적서 2개 이상 제6 ○ 결과보고서(결과물 포함), 검수확인서(조서)  <불인정 기준>
- 사업 수 - 회의 참	- -행기업 내부인 - -행기업 <b>별로 1</b> :	회 최대 1	5,000원 편성 가능	사업비 전용카드 사용 및	<정산시 제출서류> ○ 내부 계획서(결재문서), 지출결의서 ○ 사업비카드영수증 or 전자세금계산서(이체내역 증빙 -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, 거래처 통장사본, 시업지등록증 제6 ○ 견적서, 비교견적서 ※ 500만원 이상 계약의 경우 비교견적서 2개 이상 제6 즐 결과보고서(결과물 포함), 검수확인서(조서)  <불인정 기준> ○ 사업수행과 관련없는 임차비용
- 사업 수 - 회의 참	- -행기업 내부인 - -행기업 <b>별로 1</b> :	회 최대 1	5,000원 편성 가능	사업비 전용카드 사용 및	<정산시 제출서류〉 ○ 내부 계획서(결재문서), 지출결의서 ○ 사업비카드영수증 or 전자세금계산서(이체내역 증빙, -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, 거래처 통장사본, 사업지등록증 제6 ○ 견적서, 비교견적서 ※ 500만원 이상 계약의 경우 비교견적서 2개 이상 제6 ○ 결과보고서(결과물 포함), 검수확인서(조서)  <불인정 기준〉 ○ 사업수행과 관련없는 임차비용 ○ 전자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으로 처리한 사업비 (예: 국세청 미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)
- 사업 수 - 회의 참	- -행기업 내부인 - -행기업 <b>별로 1</b> :	회 최대 1	5,000원 편성 가능	사업비 전용카드 사용 및	<정산시 제출서류> ○ 내부 계획서(결재문서), 지출결의서 ○ 사업비카드영수증 or 전자세금계산서(이체내역 증빙) -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, 거래처 통장사본, 사업지등록증 제6 ○ 견적서, 비교견적서 ※ 500만원 이상 계약의 경우 비교견적서 2개 이상 제6 ○ 결과보고서(결과물 포함), 검수확인서(조서)  <불인정 기준> ○ 사업수행과 관련없는 임차비용 ○ 전자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으로 처리한 사업비
- 사업 수 - 회의 참	- -행기업 내부인 - -행기업 <b>별로 1</b> :	회 최대 1	5,000원 편성 가능	사업비 전용카드 사용 및	<정산시 제출서류〉 ○ 내부 계획서(결재문서), 지출결의서 ○ 사업비카드영수증 or 전자세금계산서(이체내역 증빙, -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, 거래처 통장사본, 사업지등록증 제6 ○ 견적서, 비교견적서 ※ 500만원 이상 계약의 경우 비교견적서 2개 이상 제6 ○ 결과보고서(결과물 포함), 검수확인서(조서) <불인정 기준〉 ○ 사업수행과 관련없는 임차비용 ○ 전자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으로 처리한 사업비 (예: 국세청 미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) ○ 결과보고서가 약식으로 작성되었거나, 미작성 된 경우
- 사업 수 - 회의 환 임차비	행기업 내부인: 상 <b>석인원 별로 1</b> : 과제추진	회 최대 1	5,000원 편성 가능	사업비 전용카드 사용 및	<정산시 제출서류〉 ○ 내부 계획서(결재문서), 지출결의서 ○ 사업비카드영수증 or 전자세금계산서(이체내역 증빙, -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, 거래처 통장사본, 사업지등록증 제6 ○ 견적서, 비교견적서 ※ 500만원 이상 계약의 경우 비교견적서 2개 이상 제6 ○ 결과보고서(결과물 포함), 검수확인서(조서) <불인정 기준> ○ 사업수행과 관련없는 임차비용 ○ 전자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으로 처리한 사업비(예: 국세청 미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) ○ 결과보고서가 약식으로 작성되었거나, 미작성 된 경역 ○ 결과보이 미 제출됐거나, 임차대상물이 비용에 비행
- 사업 수 - 회의 환 임차비	행기업 내부인: 상 <b>석인원 별로 1</b> : 과제추진	<b>회 최대 1</b>	5,000원 편성 가능 필요한 임차비용	사업비 전용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	<정산시 제출서류〉 ○ 내부 계획서(결재문서), 지출결의서 ○ 사업비카드영수증 or 전자세금계산서(이체내역 증빙 -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, 거래처 통장사본, 시업자등록증 제6 ○ 견적서, 비교견적서 ※ 500만원 이상 계약의 경우 비교견적서 2개 이상 제6 ○ 결과보고서(결과물 포함), 검수확인서(조서) <불인정 기준> ○ 사업수행과 관련없는 임차비용 ○ 전자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으로 처리한 사업비(예: 국세청 미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) ○ 결과보고서가 약식으로 작성되었거나, 미작성 된 경역 ○ 결과보이 미 제출됐거나, 임차대상물이 비용에 비행
- 사업 수 - 회의 출 임차비 - 임차비 - 임차비 - 용작비	행기업 내부인: *석인원 별로 1:	<b>회 최대 1</b> 과정에서 의(지원금: 합산 금액	5,000원 편성 가능 H 필요한 임차비용 + 자부담) 30% 이내로 편 이 총 사업비의 70%를 최	사업비 전용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	<정산시 제출서류〉 ○ 내부 계획서(결재문서), 지출결의서 ○ 사업비카드영수증 or 전자세금계산서(이체내역 증빙 -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, 거래처 통장사본, 시업지등록증 제: ○ 견적서, 비교건적서 ※ 500만원 이상 계약의 경우 비교견적서 2개 이상 제: ○ 결과보고서(결과물 포함), 검수확인서(조서) <불안정 기준〉 ○ 사업수행과 관련없는 임차비용 ○ 잔자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으로 처리한 사업비(예: 국세청 미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) ○ 결과보고서가 약식으로 작성되었거나, 미작성 된 경: ② 결과물이 미 제출됐거나, 임차대상물이 비용에 비해과도하게 미미한 경우
- 사업 수 - 회의 출 임차비 (주의사항) - 임차비 - 용역비 - 수의계	행기업 내부인: *석인원 별로 1:	회 최대 1 과정에서 의(지원금 합산 금액 이만원 이리	5,000원 편성 가능 H 필요한 임차비용 + 자부담) 30% 이내로 편 이 총 사업비의 70%를 최	사업비 전용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	<정산시 제출서류>         ○ 내부 계획서(결재문서), 지출결의서         ○ 사업비카드영수증 or 전자세금계산서(이체내역 증빙 -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, 거래처 통장사본, 시업자등록증 제(
- 사업 수 - 회의 환 임차비 - 임차비 - 용위비 - 장역비 - 자산취	행기업 내부인: * 석인원 별로 1: - 과제추진 - 과제추진 - 용은 총 지원급: - 용과 임차료의 1 약은 건당 2,000	회 최대 1 과정에서 의(지원급: 합산 급액 이만원 이태성 성 불가	5,000원 편성 가능 H 필요한 임차비용 + 자부담) 30% 이내로 편 이 총 사업비의 70%를 최	사업비 전용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 <b>가능</b> 과 <b>함 수 없</b> 여성기업의	<정산시 제출서류〉 ○ 내부 계획서(결재문서), 지출결의서 ○ 사업비카드영수증 or 전자세금계산서(이체내역 증빙 -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, 거래처 통장사본, 시업지등록증 제: ○ 견적서, 비교건적서 ※ 500만원 이상 계약의 경우 비교견적서 2개 이상 제: ○ 결과보고서(결과물 포함), 검수확인서(조서) <불안정 기준〉 ○ 사업수행과 관련없는 임차비용 ○ 잔자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으로 처리한 사업비(예: 국세청 미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) ○ 결과보고서가 약식으로 작성되었거나, 미작성 된 경: ② 결과물이 미 제출됐거나, 임차대상물이 비용에 비해과도하게 미미한 경우

	구 분	사저 기	준 및 세투	1 II Q	집행		증빙사항		
비목	세목	[변경기	ᆙᄄᇎᄱ	- чь	방법		56/18		
	일반 수용비 (용역비)	○ 과제추진 고 조사, 홍보 : 하는데 드는	등)를 외부기		전용카드	<ul> <li>사업비카</li> <li>전자세금</li> <li>견적서,</li> <li>* 500만원</li> <li>결과보고</li> <li>〈불인정 기ɨ</li> <li>사업수행</li> <li>전자세금</li> <li>(예: 국세:</li> <li>결과보고</li> <li>결과보고</li> <li>결과물이</li> </ul>	획서(결재문서), 지출결의 드영수증 or 전자세금계( 계산서의 경우, 거래처 통장시 비교견적서 이상 계약의 경우 비교견 서(결과물 포함), 검수확	산서(이체내역 중 본, 사업자등록증 보본, 사업자등록증 보선(조선) 보건한 사업비 산서) 내나, 미작성 된 등	제출
	- 개인이니 - 수의계의 - 용역비용 - 자산취득	용은 총 사업비(지원 가 개인사업자와는 밖은 건당 2,000만 강과 임차료의 합신 등성 용역비용은 편 같은 사업기간(협약할	<b>용역계약을 체</b> 원 이하까지만 · <b>금액이 총 사</b> 성 불가	결할 수 없음 체결 가능하고, 업비의 70%를 :	여성기업의 <b>초과할 수 없</b>		청가격 5,000만원까지 체결	가능	
ЯШ	국내여비	○ 사업 참여인턴 * 국내여비만			사용 및	○ 출장신청 ○ 출장결과 증빙사전 ○ 교통비, - 교통비, - 숙박은 <불인정 기: ○ 숙박, 교	증빙 또는 사업비 카드 서(출장자, 출장지, 목적 보고서(출장자, 출장지, 목 1 포함) 숙박 등 실재성증빙 = 탑승권(이 모바일탑승권)고 숙박영수증	, 출장일정) 목적, 일정, 소요비 남영수증 대행수수료 시 발생한 수수	
		[주의사항] - 항공, 선박, K( - 대행사이트(인) - 결재(예약) 취 - 여비 등 규정은 - 구분 등급	러파크, 하나투 쇼, 변경시 발성	어 등) 통한 구대 병한 수수료는 불 라야 하며, 초과자 <b>선박</b> <b>운임</b>	배시 발생한 : 인정	수수료는 불인	일반버스 등은 불인정 정 <b>숙박비</b> ( <b>1박당</b> ) 실비 (상한액: 서울특별시 10만원, 광역시 8만원, 그 밖의 지역 7만원)	식비 (1일당) 25,000	

- 11 -

## □ 집행내역별 공통 증빙사항 및 불인정 기준

구분	공통사항
불인정기준	○ 협약체결일 이전 또는 2024년 10월 31일 이후 집행한 금액 ※ 단, 인건비는 2024년 11월 30일까지 집행 가능 ※ 부득이한 경우, 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거쳐서 2024년 11월 30일까지 집행 가능 ○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○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○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약정된 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○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바여비 및 4대보험 기업부담금 ○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,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○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○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, 인작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○ 대표자와 인척관계(4촌 이내)인 사업장과 거래한 경우 ○ 용역비, 임차비를 개인 및 개인사업자와 거래한 경우 ○ 관리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용한 경우 ○ 부동산임차료, 공과급 납부 등 지원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없는 비용 ○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 제한 업종
중빙사항	0 모든 지출은 건별로 내부기안문 필수 첨부 0 인건비,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대금집행이 아닌 경우 사업비 카드(체크) 사용을 원칙으로 함

## □ 기타 준수사항

- 해당 사업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, 예산편성기준, (재)제주영상문화산업 진흥원의 규정을 준용함
- O 사업비 편성기준 내 예산비목을 제외하고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
- 총사업비(지원금+자부담)의 10% 이상 자부담(현금) 편성 필수
- 사업비(자부담금 포함) 지출시 **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인정**함
- 사업비는 협약일로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편성 및 지출 가능
- 단, 인건비는 협약일로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편성 및 지출 가능
- 용역비, 임차비의 경우 개인 및 개인사업자와 거래 불가
- 지원금(자부담금 제외)의 100%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※ 보험료는 사업비에 편성할 수 없음(기업자부담)
- O 선정기업은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보고서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.

단,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에서 별도의 제출일정을 고지한 경우에는 해당 일정을 준수해야 함

- ※ 정산보고서 제출시, 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서 회계검증을 받아야 하며, 검증비용은 사업비에 편성 및 지출 가능
- O 사업종료시 자부담액은 전액 지출돼야 하며, 미지출될 경우에는 동률의 지 워금을 강액 조치하여 반납받을 수 있음
- O 지원금 잔액발생 및 불인정금액 발생시, 정산시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함

## 6

## 유의사항

## □ 유의사항

- 본 사업의 신청, 사업수행에 있어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의 규칙,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, 수행기업의 책임으로 봄
- 제출된 신청서류는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,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O 제출 서류 중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항목에 날인이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은 제안 으로 인정하지 않음
-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,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지원 기관(정부 및 공공기관)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 취소, 지원금 회수,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O 수행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 할 경우,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
- 본 사업 협약 체결 이후에 협약 해지 또는 사업 기간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O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, 지원금의 부당(유용, 횡령 등) 사용,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,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 할 수 있으며, 또한 향후 지원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음
- O 과제수행기관에 제재 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 조치 내용(수행기업명, 사유, 제재내용 등)을 우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
- 과제수행기관은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(계좌)으로 구분·관리하여야 함
- 신청일 기준 국세, 지방세 및 4대보험 미납액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지원불가
- 과제결과물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,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에서 홍보·마 케팅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행사 등에서 전시·시연될 수 있음
- O 사업내용 및 지원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사업요강 및 접수 요령 미숙지에 따른 지원취소 등의 책임은 일체 접수자에게 있음